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0
----------	-----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7일

발 의 자 : 김기만 의원

찬 성 자 : 김광수(노원), 김동승, 김동욱,
김제리, 문상모, 박성숙, 박중화,
성백진, 송재형, 우창윤, 이명희,
최영수, 최조웅, 한명희, 황준환
의원 (15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 발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 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로 띄어쓰기를 함.

나. “의한”을 “따라”로 함(안 제3조제1항)

다.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국내·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안 제3조제2항제6호),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안 제3조제2항제7호), 관광 상품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 사업 (안 제3조제2항제8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자 건전 육성사업 (안 제3조제2항제9호), 관광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안 제3조제2항제10호)”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 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국내·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7.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8. 관광 상품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 사업
9.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자 건전 육성사업
10. 관광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p> <p>① 이 조례에 <u>의한</u> 보조금 지급대상은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p> <p>②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5.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3조(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p> <p>① ----- <u>따른</u> ----- -----.</p> <p>② ----- ----- -----.</p> <p>1.~5. (현행과 같음)</p> <p><u>6.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국내·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u></p> <p><u>7.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u></p> <p><u>8. 관광 상품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 사업</u></p> <p><u>9.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자 건전 육성사업</u></p> <p><u>10. 관광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u></p> <p><u>11. -----</u> -----</p>